

대법원 2021. 3. 25 선고 2020다29780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

aaa

피 고

BBB

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1. 선고 2020나16289 판결

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,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